회 계 규 정

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국가”를 “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회계관계부서장”을 “상임이사”로 한다.

제75조제10호 중 “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와 물품제조 및 500만원이상인 용역계약으로써 계약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인 경우에”를 “공사, 물품제조(구매는 제외) 및 용역”으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이에 따른 세부 지급범위 및 지급예외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공단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공기업법,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예산·계약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기 법령(규정)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지방자치단체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6조(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)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한다.	제6조(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~2. (생 략)	1.~2. (현행과 같음)
3. 물품관리관: 회계관계부서장	3. --------: 상임이사
4.~13. (생 략)	4.~13. (현행과 같음)

제75조(선급금 지급의 범위)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75조(선급금 지급의 범위) ----------.
1.~9. (생 략)	1.~9. (현행과 같음)
10.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 공사의 물품제조 및 500만원이상인 용역계약으로써 계약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인 경우에 계약금액의 70/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.	10. 공사, 물품제조(구매는 제외) 및 용역----------.
<신 설>	다만, 이에 따른 세부 지급범위 및 지급예외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.
11.~13. (생 략)	11.~13. (현행과 같음)